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31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김종민·최혁진·전종덕
박수현·어기구·문진석
박희승·천하람·위성곤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

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벌칙)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 ----- ----- ----- --제41조 및 제41조의2----- ----- ----- ----- -----. ----- ----- ----- ----- -----.